

2024년도 자원순환산업 창업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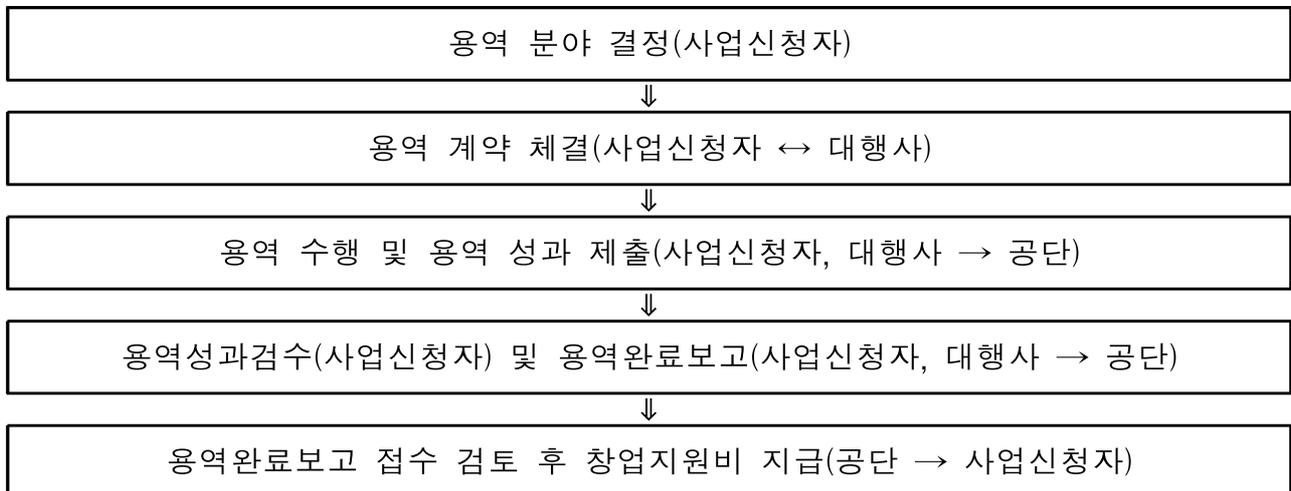
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창업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□ 사업신청

- 사업기간: 사업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: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 (www.recycling-info.or.kr)을 통해 제출
 - ※ 창업 지원사업은 공단 홈페이지와 자원순환마루에 등록된 대행사와 상담 후 신청
 - ※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eco.or.kr> 핵심사업-자원순환-자원순환사업-자료실) 및 자원순환마루(<http://www.recycling-info.or.kr> 고객지원-공지사항)에 등록된 운영지침 참고
- 신청대상: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3조(자원순환 산업)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자원순환산업 창업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·업체

□ 신청절차

- 창업 지원사업



○ 직접(셀프) 창업 지원사업

추진절차	지원(수행) 방법	비 고
↓		
창업지원 신청서 제출	○ 자원순환마루를 통해 신청	사업신청자
↓		
창업지원 신청서 접수	○ 신청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 접수	공단 (환경본부·지사)
↓		
창업지원 신청서 승인	○ 접수된 신청서 및 자료 검토, 승인(반려) ○ 필요시 요구사항 보완 요청	공단 (환경본부·지사)
↓		
창업 지원사업 착수	○ 과업수행	사업신청자
↓		
창업 지원사업 완료보고	○ 완료보고서 제출 ○ 검토 및 보완 시정조치 요구 ○ 완료보고서 승인	사업신청자, 공단 (환경본부·지사)
↓		
창업지원비 청구	○ 창업지원비 지급 청구	사업신청자
↓		
창업지원비 승인	○ 접수된 청구서 등 서류 검토, 승인(반려) ○ 필요시 요구사항 보완 요청	공단 (환경본부·지사)
↓		
창업지원비 지급	○ 창업지원비 지급(공단 → 사업신청자)	공단 (환경본부·지사)

○ 기술지도 지원사업

기술지도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(신청기업 ↔ 기술지도기관)
↓
기술지도 지원신청(신청기업·기술지도기관 → 공단)
↓
검토 후 승인(공단 → 신청기업, 기술지도기관)
↓
기술지도 용역 진행(기술지도기관 → 신청기업)
↓
용역완료 후 기술지도비 지급 요청(기술지도기관, 신청기업 → 공단)
↓
용역완료업체 현장조사 등 검수 및 기술지도사업비 지급(공단 → 신청기업)

□ 지원분야 및 조건

지원분야		내 용
창업 지원 사업	사업타당성 검 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의 적합성, 기술성, 시장성, 경제성 검토 ○ 인력분석, 시장성, 기술성, 경제성 등에 관한 타당성 분석 ○ 기타 창업관련 타당성 검토
	사업계획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승인 서류 작성 및 창업 절차 대행
	인·허가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·허가 서류 검토 및 절차 대행
	경 영 관 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, 재무, 생산, 판매 등에 대한 지도
기술 지도 지원 사업	공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·품질 향상, 생산시간 단축, 비용절감,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지원 - 특히,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우대 - 지원예시 : (종전) ①→②→③→④ ⇨ (개선) ①→②→③ ○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[※ 단, ERP(기업자산 관리)등 시스템 구축 제외]
	환경개선 및 시제품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산 공정상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무기피 해소와 관련된 공정개선 ○ 개발기술의 상용화(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)를 위한 시제품 제작

□ 지원분야별 최대지원한도액 및 최대지원율

(단위: 만원)

지원분야		사업비	한국환경공단 최대지원한도액 · 최대지원율					
			일반 지원자		우대 지원자			
			최대지원 한도액	최대지원율	최대지원 한도액	최대지원율		
창 업 지 원 사 업	① 사업타당성검토		300	240	80%	270	90%	
	② 사업계획 절차		760	600		680	90%	
	인 허 가 절 차	③ 수집·운반업 (신고 제외)	대행	180	140	80%	160	90%
			직접	-	110	-	-	-
		④ 수집·운반업 외 (폐기물 재활용업 등)	대행	610	480	80%	540	90%
			직접	-	360	-	-	-
⑤ 경영관리		450	360	80%	400	90%		
기 술 지 도 지 원 사 업	⑥ 공정개선		5,000	4,000	80%	4,500	90%	
	⑦ 환경 개선 및 시제품 제작 등		5,000	4,000	80%	4,500	90%	

※ 우대 지원 대상자: 청년, 장애인, 여성, 북한이탈주민, 노인, 다문화가족

※ 총 사업비 중 한국환경공단의 최대지원율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~90% 범위 이내이며,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신청자 및 신청기업에서 부담한다.

※ 한국환경공단은 동일 창업자에게 창업지원비를 3개 분야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.

- 각 분야별로 개별 신청 가능하나, “③ 수집·운반업(신고 제외) 인허가 절차”는 “② 사업계획 절차” 분야에 한하여 동시 지원이 가능하고, “① 사업타당성검토”와 동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
- 단, “④ 수집·운반업 외(폐기물 재활용업 등) 인허가 절차”는 “① 사업타당성검토”, “② 사업계획 절차” 분야와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※ 경영관리용역은 타 분야와 동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□ 환경본부 및 지사별 담당자

환경본부 · 지사	전화	전송(FAX)
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	032-590-4116	032-590-4119
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	031-590-0611	031-590-0624
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	02-3153-0508	02-3153-0599
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	051-366-3702	051-366-3719
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	053-580-7551	053-591-7347
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	042-939-2345	042-939-2320
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	043-219-6404	043-215-0169
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	062-949-0311	062-959-8896
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	064-722-8510	064-721-5564
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	033-240-9537	033-240-9501
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	063-279-0815	063-273-6050

※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환경본부 및 지사 담당자에 연락 바랍니다.

2024. 4.

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